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서초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서 초 구 청 장

1. 허가구역 지정

○ 모아타운 추진 지역(1개소)

- 지정기간 :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
- 지정범위 : 모아타운 사업구역(38,793.6㎡) 내 **지목 '도로' 한정**
- 대상지역 : 양재동 77 일대 (**토지조서 참조**)
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3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열람

- 확인방법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→[기타정보]→[토지거래허가]→[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시)]

※ 유의사항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 정정 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최종적인 구역 포함 여부는 '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'을 기준으로 함.
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확인

- 확인방법 : 세부 지형도면 및 관련 정보는 토지e음(www.eum.go.kr)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, 상세 도면은 별도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지정

서초구 양재동 77 일대

